

특수 교육에 관한 설명서

해결이 안된 상태 (Stay Put 조항)

해결이 안된 상태란?

공청회나 중재 조정 신청이 진행 중 (아직도 진행 절차가 남아 있는) 이거나, 청원을 신청한 후 그 결과가 나올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배정했던 현재의 그 자리에 학생이 계속 다닐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말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개개인을 위한 교육적인 법] (“IDEA”)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 주 혹은 지역 담당 교육청과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때 부터 현재까지 교육적으로 배정 되었던 그 자리에 학생이 계속 다닐 수가 있다.....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인 경우에도 부대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아니면 단지 배정된 교실만이 해당되나?

그렇다. 해결이 안된 상태인 경우에도 장애 학생으로서 혜택 받고 있는 부대 시설과 그리고/혹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실에 배정된 것도 이에 해당 된다. 논리상 학생에게 복잡한 변화를 주지않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공청회 담당자나 판사의 명령에 따라 적당한 해결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학생이 혜택받고 있는 부대 시설에 대한 현재의 수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다.

그때 부터 현재까지 교육적으로 배정되었던 그 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나?

“그때 부터 현재까지 교육적으로 배정되었던 그자리”란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 절차를 시작하였을때 합의하여 배정되었던 그 자리’를 의미 한다고 법원에서는 정의를 내렸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교육적으로 배정한다는 의미는,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변경 하지 않은 채 그동안 학생을 위하여 제공되었던 마지막 프로그램에 따라 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청회 담당자, 주 정부 조사관 혹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학생이 공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립 학교가 아닌 그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학생이 사립 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있나?

그렇다. 만일 학생이 다니는 현재의 학교가 사립 학교라면,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다.

만일 공청회에서 패소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하나?

소송에서의 좋은 결과에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학생들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여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재 배정받은 곳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해결이 안된 상태를 유발 하는가?

장애가 있는 개개인을 위한 교육법(IDEA)중 그대로 남아 있는 Stay Put 조항으로 알려진 것처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조정 신청을 요구할때, 이는 해결이 안된 상태가 된다. 이런 요구는 항상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어떤 공청회의 담당자는 “해결이 안된 상태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의 한 과정이거나 예비 회담 정도로 간주한다. 뉴욕 시 교육국(“DOE”)에서는 공청회 담당자의 명령 없이는 해결이 안된 상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분쟁을 조정해 주는 담당자는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공청회를 신청할때, 절차가 진행중 해결이 안될 경우 그에 대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 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연방법에서는 IDEA 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동안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중재하는 것이 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몇몇은 논쟁 할 것이다. 공청회와 중재 조정 신청은 연방법에서 공인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중재나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유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가로, 교육국의 표준 진행 절차 설명서에는 중재 조정 신청하는 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¹

해결이 안된 상태가 지속되면 학생은 얼마 동안 그런 상태에서 배정 되었던 곳에 있을 수 있나?

분쟁 조정 중재 혹은 공청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청원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배정되었던 곳에 계속 다닐 수가 있다. 중재를 통하여 서로 합의를 보거나 공청회 담당자, 주 정부 조사관 혹은 판사로 부터 최후 결정을 통보 받거나, 상대방 어느 누구도 정해진 시간내에 결정에 불복하여 청원서를 접수 시키지 않을때 해결이 안된 상태는 종료가 된다.

교육국과 합의에 도달 한다면 진행 절차 기간 동안 결정을 내리기 전 해결이 안된 상태는 종료가 된다.

¹ <http://schools.nyc.gov/NR/rdonlyres/5F3A5562-563C-4870-871F-BB9156EEE60B/0/03062009SOPM.pdf>, pgs. 11, 126.를 참고할 것

예를 들어, 공청회를 요구 하였다면,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변경하여, 학부모가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배정에 관한 제안을 해 올 것이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부대 시설이나 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진행이 절차되는 기간동안 그런 각종 부대 시설 그리고/혹은 교육 비용을 학군에서 계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지 새로운 학교에 배정하거나 부대 시설에 관하여 서로 합의에 도달하거나, 만일 공청회 담당자, 주 정부 조사관 혹은 판사가, 현재 배정된 곳이나 부대 시설이 학생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군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지 할 수도 있다.

만일 공청회에서 패소 하였다면, 학교에서 지불한 비용을 환불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나?

아니다. 만일 패소 하여도, 학생은 계속하여 사립 학교에 다닐 수가 있고 해결되는 기간 동안 부대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청원 신청을 하겠다고 결정하여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의 모든 것들은 청원에 대한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 된다. 이는 본인이 승소와 패소에 상관없이 학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배정되었던 학교에서 학생을 전학 시키려고 혼자 결정 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하나?

만일 학생이 공립 학교에 배정 되었는데, 교육국의 승인없이 배정된 곳에서 학생을 사립 학교로 전학 시켰다면, 학부모 본인 스스로 교육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 학생에게 알맞는 공립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사립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불 필요하다 라는 결정을 판사나 공청회 담당자가 내리고, 따라서 지불한 수업료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연방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립 학교에 대한 설명서를 참고 하여라.

아이가 유아원에서 유치원까지 다닐 경우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미 취학에서 부터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 해당될때 까지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 취학에 해당되는 학생이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단 배정이 되면 미 취학 상태로 되 돌아 갈 수는 없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부대 시설이나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과거 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나, 그러나 부대 시설은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다른 학교에서나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옛날에 다니면서 제공받았던 미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능하면 취학 학생을 위한 동일한 프로그램에 학생을 배정할 것이다. 학생이 다녔던 미 취학 학교에 주 정부가 인가한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취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부대 시설을 제공 받을 수가 있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학생은 무엇을 하나?

언어 발달 치료나 상담과 관련된 부대 시설이 가능한 공립 학교²에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CTT) 학생.

² 교육국 (중앙 지원 팀 (CBST)을 통하여)에 의해 공청회 결정에 따르거나 혹은 교육국에서 상대방과 사전 합의를 보아 사립학교에 아이를 배정하였다면 똑같은 사항에 해당된다.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학생에게 언어 발달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으나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실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학부모는 언어 발달 치료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중재 조정 신청을 요구 한다.
 - ◆ 이 경우 해결이 안된 상태는 언어 발달 치료를 말한다.
-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학생을 소수 정원의 교실에 배치하고 똑같은 부대 시설을 제공하지만 교사 한명당 학생 수 12 명의 비율로 교실에 배치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학부모는 학생 수가 많은 교실에 배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실에 추가로 부대 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공청회에 신청 한다.
 - ◆ 이 경우 해결이 안된 상태는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 개별화된 교육적인 프로그램(IEP)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학생이 교육과 관련된 장애 문제가 더 이상 없어 장애 학생으로 분리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다. 학부모는 학생이 아직도 특수 교육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1 년 더 IE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공청회에 요구 한다.
 - ◆ 이 경우 해결이 안된 상태는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실과 그와 관련된 부대 시설을 말한다.

참 조

- 기록을 하여 보관할 것
 - 모든 전화 내용과 개별적으로 만난 회의나 모임의 내용을 기록
 - 교육국으로 부터 받은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할 것
 - 모든 서신과 봉투를 잘 보관할 것
 - 서류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으면, 모든 서류나 봉투의 뒷면에 받은 날짜를 적어 놓을 것
-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하여 모든 서신을 보내고, 전달 받은 사람에게 복사본에 서명과 날짜를 적어 달라고 부탁할 것
- 항상
 - 교육국에 보낸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할 것
 - 관련된 교육국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
 - 가능하면, 직위, 사무실 그리고 자세한 연락 사항들
 -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어 놓을 것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설명서를 어떤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2011 년 7 월